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 결 정 문

---

사건번호: KR-0800022  
신청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피신청인: 김종희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1번지

대리인: 변리사 남호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3 디앤엠빌딩 5층

피신청인: 김종희,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343

분쟁도메인이름은 “sktelecom.org”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  
식회사 가비아(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륙포  
스트타워 2차 11층)”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의 2008년 1월 25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한다)인 인터넷주소분쟁조  
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8년 1월 25일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8년 1월 25일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08년 1월 28일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08년 1월 28일 센터는 “신청서 전송 표지” 를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등기우편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여 2008년 1월 29일 피신청인에게 도달하였음을 배달증명 우편을 통해 확인하였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을 2008년 2월 18일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08년 2월 15일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08년 2월 18일 센터는 이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3인 조정부로서 신청인의 후보자 중에서 김종윤 조정위원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08년 2월 18일 김종윤 조정위원은 조정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하였다. 피신청인의 후보자 3인에게 2008년 2월 18일 선임을 요청하였으나 후보자 3인 모두 제척사유가 있다는 답변을 2008년 2월 18일 및 2008년 2월 19일에 하였다. 이에 센터는 후보자 외의 조정위원인 장문철 조정위원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08년 2월 19일 장문철 조정위원은 조정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하였다. 센터에서 3인 조정부의 주조정인으로 최성준 조정위원에게 2008년 2월 19일 선임을 요청하였고, 2008년 2월 25일 최성준 조정위원은 조정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받아 2008년 2월 25일 조정부 구성 예정통지를 하였고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2008년 3월 3일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센터는 관련 서류 일체를 2008년 3월 3일 조정부에서 송부하였고 2008년 3월 4일 각 조정인에게 도달하였음을 배달증명 우편을 통해 확인하였다.

### 3. 사실관계

갑 제2호증의 1 내지 18,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대한민국 전역에 이동전화 및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 기업으로서 1997년 그 상호를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

변경한 사실, 신청인은 1998년부터  에스케이 텔레콤 ,

 SK TELECOM ,  SK텔레콤 SK Telecom , 

표장에 관하여 무선통신업, 데이터통신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거나 휴대용통신기계기구, 전화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7건의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을 한 사실(이하 위 상표 및 서비스표를 ‘신청인의 표장’이라고 한다), 신청인이 SK TELECOM(에스케이텔레콤) 또는 그것이 포함된 상호,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달성한 매출액은 2003년에 약 9조 5,000억 원, 2004년에 약 9조 7,000억 원, 2005년에 약 10조 1,000억 원, 2006년에 약 10조 6,000억 원에 이르고, 대한민국 내에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998년 10월 당시 580만 명이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1,830여만 명, 2004년에는 1,870여만 명, 2005년에는 1,950만 명, 2006년에는 2,020만 명이 되었고, 수년 동안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실(대한민국 내 3,000만 이동전화 사용자 중 절반 이상이 신청인의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신청인은 1998년 한국능률협회 산하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선정하는 고객만족 서비스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1999년 위 기관이 실시한 브랜드 파워 조사 결과 기업이미지 부문에서 6위, 이동전화서비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2000년, 2002년 위 기관 및 다른 기관들이 각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이동전화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05년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조사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8위에 선정된 사실(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을 기재하였고, 다른 해에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짐작된다), 신청인은 sktelecom.com 및 sktelecom.co.kr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sktelecom.com을 신청인의 공식 웹사이트로 개설하여 신청인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및 고객지원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주소창에 sktelecom.co.kr을 입력할 경우 sktelecom.com으로 개

설한 위 웹사이트로 자동적으로 포워딩되도록 하여 놓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 8호증, 을 제2, 3, 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2. 5. 30. “sktelecom.org” 도메인이름(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을 등록하고,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웹사이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메뉴는 “NEWS”, “휴대폰보조금&SK서비스불만”, “자유게시판”, “피해신고”, “유용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하단의 ABOUT SKTELECOM.ORG를 클릭하면 위 웹사이트를 소개하는 글(Introduction)이 표시되는데, 여기에는 “SKtelecom.org는 ANTI SK 텔레콤 사이트로서 SK 텔레콤을 이용하시는 모든 사용자의 권익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이트입니다.(중략) SKtelecom.org는 SK텔레콤과는 무관하며, SK텔레콤을 단순히 비하시키거나 감정적으로 대하기 보단, SK텔레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공유하며, SK텔레콤 서비스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메뉴 중 “NEWS” 클릭하면 주로 신청인 및 신청인의 모기업을 비방하거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타나고, “휴대폰보조금&SK서비스불만”을 클릭하면 FORUM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신고”를 클릭하면 INFO라는 제목 아래 각각 주로 신청인의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글들이 나타나며, “자유게시판”을 클릭하면 신청인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비난하는 내용, 신청인의 직원에 대한 칭찬 및 불만, 요금에 관한 내용 등 다양한 글들이 나타나고, “유용한 정보”를 클릭하면 이동전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들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도 나타나는 사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에 바로 앞서 2002. 4. 29. antiskt.com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2002. 5. 3.경 분쟁도메인이름으로 개설된 웹사이트와 거의 같은 내용의 웹사이트를 먼저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실, NAVER 디렉토리에서 사회, 정치 > 이슈 > 사회이슈 > 안티, 반대로 들어가면 언론, 미디어 부문의 인기도가 높은 사이트로 “SK텔레콤 안티 이스테이션” 이 나타나는데 그 주소가 <http://www.antiskt.com>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고, 'sktelecom'이라는 문자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저명한 신청인의 상호 및 표장과 완전히 동일한 철자로 구성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부터 분쟁도메인이름으로 개설된 웹사이트(4항에서는 이하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라고 한다)가 신청인의 웹사이트인 것으로 오인, 혼동을 야기하여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로 유인하고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먼저 등록 및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공공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는 그 내용이 대부분 악의적인 비방과 비난으로 구성되어 신청인의 상호와 표장의 식별력과 명성을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규정' 제4조 b항에 예시되어 있는 (iii) 등록인이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및 (iv) 등록인이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로 유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을 3억원에 판매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규정' 제4조 b항 (i) 서류에 의해 입증된 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결국,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하여야 한다.

##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피신청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SK텔레콤 고객으로서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서비스 이용 중 개선할 사항 및 이용자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사용자 커뮤니티 공간인 SK텔레콤 안티사이트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는 정당한 행위이다.

(2)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는 명백히 안티사이트임을 명시하고 있어서 신청인의 표장과 혼동될 우려는 전혀 없으며, 그 내용은 단순히 비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 칭찬, 요금 절약방법 및 서비스공유 등 정당하고 유익한 글도 많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경영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고 과장된 것이다.

(3)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몇 차례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주목적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문에 기사화되거나 사회적 이슈를 일으켜서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를 널리 알리고 SK텔레콤 안티사이트의 불만사항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을 뿐이다.

(4)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도메인이름 분쟁의 판단기준은 ‘규정(UDRP)’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고, 이에 의할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 5. 검토 및 판단

### 가. 이 절차에서 도메인이름 분쟁에 적용하여야 할 규정

먼저, 피신청인의 주장 중 (4)의 앞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 신청인의 추가진술서에 첨부된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처음으로 등록한 등록

기관인 닷네임코리아의 도메인 등록약관 제14조와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전등록한 등록기관인 가비아의 도메인 약관 제15조는, 도메인이름에 관련된 분쟁은 ICANN이 정한 ‘규정{Uniform Domain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통상 UDRP라고 약칭한다)}’ 등에 따라 해결하고, 위 Policy는 위 각 등록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신청인은 위 각 등록약관에 동의를 함으로써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 이에 의하여 ‘규정’은 도메인이름 등록인에 대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다. 한편, 신청인은 ICANN이 지정한 분쟁해결기관 중 하나인 ADNDRC에 ‘규정’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자신에게 이전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규정’에 따르겠다고 동의를 하였다. 이로써 분쟁도메인이름 분쟁에 관한 이 절차에서는 ‘규정’이 판단기준이 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신청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의 취지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은 ‘규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예를 들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규정’에 따른 이 절차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 나. 분쟁도메인이름이 ‘규정’ 제4조 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이전 청구가 적법하려면 신청인은 ‘규정’ 제4조 a항이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하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A. 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분쟁도메인이름의 2단계 부분(sktelecom)은 신청인의 표장 중 영문자 부분과 철자가 동일하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거의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표장은 대한민국 내에서 일반인들에게 현저하게 알려진 매우 저명한 표장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표장 중 영문자 부분과 철자가 동일한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신청인에 대한 안티사이트를 개설하여 비영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과연 신청인에 대하여 공정한 비판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지 않으며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분쟁도메인이름 자체에, 이용자들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의하여 안티사이트(비판사이트, 항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될 것임을 표시하거나 적어도 암시하는 어떤 기재도 없는 결과, 일반인으로서 는 신청인의 표장의 영문자 철자에 의하여 또는 검색엔진을 통하여 웹사이트를 찾아가는 경우 위와 같은 안티사이트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미리 예상할 수 없고 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본 후에야 비로소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될 뿐이다(만일 안티사이트임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기재가 있다면 이용자들은 그 웹사이트의 내용을 짐작하여 방문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신청인의 저명한 표장의 영문자를 아무런 덧붙임 없이 그대로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분쟁도메인이름으로 개설된 웹사이트가 신청인의 공식 웹사이트 중 하나인 것으로 오인을 하게 하여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서, 결국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과 연결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일반인들을 속여서 유인하는 셈이 된다. 설사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공정한 비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신청인의 이러한 유인 의도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에 앞서서 2002. 4. 29. antiskt.com을 등록하고 2002. 5. 3.경 위 도메인이름으로 신청인에 대한 안티사이트 개설하였음에도 다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는 점과 현재 NAVER 등 포털사이트에 위 도메인이름 (antiskt.com)으로 개설된 웹사이트가 인기도가 높은, 신청인에 대한 안티사이트로 나타나는 점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비록 비영리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위와 같이 사용함에 의하여 신청인의 저명한 표장을 희석화시킬 여지도 다분히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신청인이 입증 증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자신이 1998년부터 현재까지 SK텔레콤 고객으로서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서비스 이용 중 개선할 사항 및 이용자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사용자 커뮤니티 공간인 SK텔레콤 안티사이트를 운영하여 왔다고 주장하는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이를 인정할 만한 그 밖의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먼저,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규정’ 제4조 b항 (iii), (iv)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위 (iii)은 경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인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경업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고, 위 (iv)에 해당하려면 등록인에게 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위 웹사이트는 비영리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신청인은 앞에서 인정한 바처럼 위 웹사이트 중 introduction 부분에서 SKtelecom.org는 SK텔레콤과는 무관하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표장이 대한민국 내에서 매우 저명한 이상, 우선 그것만으로도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갑 제10, 11,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06. 2.경 인터넷상 도메인이름 거래사이트인 yesdomain.com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을 희망판매가 미화 300,000달러에 경매에 내 놓았었고,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auction.co.kr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을 시작가 3억원, 즉시구매가 5억원에 경매에 내 놓았었으며, 2008. 1.경 역시 인터넷 전자상거래사이트인 onket.com에서 분쟁도메인이름과 antiskt.com을 판매가 3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게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서류에 의해 입증된 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위 4. B. (3)과 같이 주장하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험칙상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 D. 소결론

그러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규정’ 제4조 a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그리고 sktelecom은 위낙 저명한 신청인의 표장이고,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사회공헌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규정’ 제4조 i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이전함이 타당하다. 피신청인은 우리나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메인이름 등

록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결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법률들이 아니라 ‘규정(UDRP)’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신청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a항,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sktelecom.org>를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

최 성 준  
주조정인

---

김 종 윤  
부조정인

---

장 문 철  
부조정인

결정일: 2008년 3월 19일